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 정 2023. 5. 16.  
개 정 2024. 1. 10.  
2025. 1. 13.  
2026. 1. 1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하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라 한다)”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이 수립한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2. “녹색자산”이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대상 기초자산으로서 참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이란 녹색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4. “녹색자산유동화(이하 ‘자산유동화’라 한다)”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녹색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기업의 유동화 대상 녹색자산 이차보전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참여기업의 유동화 대상 녹색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차보전 지원금”이란 참여기업이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을 때 녹색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기후부를 대행하여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서 기술원과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유동화회사”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11. “신청기업”이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을 제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참여기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자산유동화 지원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한 신청기업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5. “적합성판단”이란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란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및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이하 ‘녹색채권’이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17.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이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채권금리”란 통상 표면금리로서 참여기업이 녹색자산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발행하였을 때 채권 액면가액(발행금액)에 표시된 연간 이자 지급률을 말한다.
19. “지원금리”란 기후부 장관이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20. “사업책임자”란 참여기업에서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정산”이란 이차보전 지원금 또는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의 사용 및 증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22. “조달자금”이란 참여기업이 녹색자산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3. “시설자금”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공장건설, 시설매입, 유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4. “운전자금”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원자재·원재료·부품의 구매, 설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공사 외주, 연구개발(R&D), 기계·장비 사용 및 임차, 운송·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3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신청기업 모집·검토·선정·협약 및 운영
4. 전문기관 협약 및 사후관리
5.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관리·정산·회수
6.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선정·협약 및 관리
7. 참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 의뢰

8.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의 지급·관리·정산·회수
9.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10.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및 각종 행사 계획·구성·운영
11.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활용 등
12.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및 중간점검 등
13. 그 밖에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적합성판단 요청서,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작성·제출
2. 사업책임자 지정 및 협약 체결
3.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 수행
4. 연차보고서, 변경사유서(필요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5.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및 각종 행사 참여·협조
6.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참여기업의 세부 역할, 사업추진 등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협의체의 결정 또는 운영기관의 계획,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참여기업의 장은 이와 관련한 사업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모집 협력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토를 마친 신청기업의 유동화회사 보증 심사
3.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유동화회사 설립
4. 참여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 보증 지원
5. 참여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금 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관리체계 수립 및 외부검토 의뢰
7.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한 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제 규정에 따르거나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 ①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모집 협력
2.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3.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사후 외부검토
4.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및 각종 행사 참여·협조
5. 그 밖에 적합성판단 또는 외부검토 수행을 위한 지원

②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선정절차, 자격요건 등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③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계획, 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의 장은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참여기업 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키관의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계속 지원에 관한 사항
4. 참여기업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참여기업의 이의신청 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후부 관계 공무원,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 환경, 금융, 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 심의,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제7조의2, 제7조의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⑧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의2(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참여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계속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3(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여기업, 전문기관 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32조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제33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후부, 운영기관, 참여기업, 전문기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유관 부처 또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제9조(사업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기술원 홈페이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사업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부문, 신청방법
3. 참여기업 선정방법, 이차보전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4.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일정 등
5. 접수 기간 및 접수처
6. 그 밖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안내 사항

**제10조(신청자격)** ① 당해연도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일 것
2.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예정) 프로젝트(이하 '녹색프로젝트'라 한다)가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의 활동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기업의 조달자금은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책임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6.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사업의 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요약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체크리스트
5.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합성판단 요청서
7.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0.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서류 원본
11. 그 밖에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및 심의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전검토)**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구비서류, 재무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기준은 전문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선정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에 관한 목표 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업의 역량 및 의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
2.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의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부합 여부 및 환경개선영향 기여 수준 등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기업 선정 취소)** 참여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장이 녹색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취소한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3.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선정 후 참여기업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5. 추진 중인 녹색프로젝트가 더 이상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참여기업 협약 체결)** ① 참여기업의 장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확정된 후 운영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협약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참여기업 명의 통장 사본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 ② 참여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 전이라도 자산유동화 관련 추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참여기업 협약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참여기업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참여기업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승인사항을 분기별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참여기업 협약 해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이 상당 시간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사항을 분기별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전문기관 협약 및 관리

**제18조(전문기관 협약)**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 서식의 협약서
2. 전문기관 명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19조(전문기관 협약 변경 및 해약)**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이 필요한 경우
2.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녹색자산 관리·운용)**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회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등 세부사

항을 정하며 이는 별표 1과 같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항을 제9조의 공고 등을 통해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알려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한다.

**제21조(이차보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요청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따라 협의된 계좌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입금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기업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2조(이차보전 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장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서 등 녹색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이 규정, 협약서 및 그 밖의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이차보전 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기업의 채권 만료일 또는 차·상환일자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수행 중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이전이라도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이차보전 지원금의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

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명시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 지원금 중에서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 지원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1조에 따라 참여기업 계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4.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5. 부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포기한 경우
6. 참여기업이 녹색자산 만기 이전 중도 상환한 경우
7.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녹색프로젝트를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25조(결과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정산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후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장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 협약 및 관리

**제26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 협약)**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협약서
2.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 명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27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 협약 변경 및 해약)**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이 필요한 경우
2.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적합성판단 및 외부검토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합성판단 요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포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적합성판단을 의뢰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참여기업의 편입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 외부검토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의 사전 외부검토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 ④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전까지 참여기업별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 ⑥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 사전 외부검토 과정 중에서 자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에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후 외부검토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의뢰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사후 외부검토 후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서 등 지원금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이 규정, 협약서 및 그 밖의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6장 연차평가 및 제재조치

**제30조(진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의 장에게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연차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의 변경사유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1. 녹색프로젝트의 정상 수행 여부
  2. 별지 제17호에 따른 변경사유 승인 여부
  3. 조달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제2호의 변경사유 승인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32조(제재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제7조의3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제2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진도관리 결과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계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여기업 또는 사업책임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지원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참여제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제7장 이의신청

**제33조(이의신청)** ① 제13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참여기업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장 사후관리

**제34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또는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기업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사후 보고, 사후 외부검토 등 관련 후속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장 보 칙

제35조(정보의 보호) 운영기관, 참여기업, 전문기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위원회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행하는 의문은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다.

### 부 칙 <2024.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6.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